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을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운영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시책사업비용”을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의 선정, 위탁, 사업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13명”을 “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의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급”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의3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3.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유아교육·초중등교육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유아교육·초중등교육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갖는 경우
2.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지방공무원인 위원이 속한

기관이 교부금의 감액·반환 및 이의신청의 대상 기관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율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원 증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증원 교원 1명당 소요액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전문직원 1명당 임금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무직원 수 × 해당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율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명당 임금 · 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무직원 1명당 임금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치우개선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명예퇴직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교육전문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

				여 정하는 교육 전문직원의 명 예 퇴 직 수 당 과 퇴직수당부담금
		명 예 퇴 직 교 육 공 무 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 무 직 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 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 단위 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 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재정여 건 등을 고려하 여 정하는 교육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 무 직원의 명예퇴 직수당과 퇴직 수당부담금
2. 학교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Sigma(\text{학교급별} \cdot \text{규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1에 따른 다.
	나. 학급경비	학급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급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급당 8,784천원 · 초등학교: 학급당 8,352천원 · 중학교: 학급당 7,765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급당 3,962천원 ·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7,787천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당 7,557천원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당 3,602천원 · 특수학교: 학급당 16,423천원 · 영재학교: 학급당 10,522천원 · 대안학교 - - 초 등 학 교 과 정 운 영: 학 급 당 7,099천원 - - 중 학교 과 정 운 영: 학

			급당 9,030 천원 - - 고 등 학 교 과 정 운 영: 학 급 당 8,702천원
다. 학생경비	학생 수	$\Sigma(\text{학교급별 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유치원: 학생당 310천원 • 초등학교: 학생 당 738천원 • 중학교: 학생당 766천원 •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당 687천 원 • 일반고등학교: 학생당 617천 원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 학생당 774천 원 • 방송통신고등학 교: 학생당 585 천원 • 특수학교: 학생 당 1,384천원 • 영재학교: 학생 당 1,942천원 • 대안학교 - - 초 등 학 교 과 정 운 영: 학생당 905 천원 - - 중 학교 과 정 운 영: 학 생당 1,192 천원 - - 고 등 학 교 과 정 운 영: 학 생 당 1,171천원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학교 수 $\times$ 단위비용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1) 선진형 • 16학급 미만: 50,000천원 • 16~23학급:

				80,000천원 · 24학급 이상: 100,000천원 2) 과목중점형: 40,000천원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 실 수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 교의 교실 수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Sigma\{\text{유형별} \cdot \text{규모(연차)별 학교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비고 2의2에 따른 다.
	아. 삭제 <2019.2.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u>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 학교 운영비</u>	<u>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 종학교수</u>	<u>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수 × 단위비용</u>	<u>444,954천원</u>
3. 교육 행 정비	가. 기관 운영 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text{학교 수} \times \text{학교당 단위비용}) + (\text{학생 수} \times \text{학생당 단위비용}) + (\text{기준교직원 수} \times \text{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	· 학교당 단위 비용: 9,406천원 · 학생당 단위 비용: 73천원 · 기준 교직원 당 단위비용: 566천원
	나. 지방선거 경 비	지 방 선 거 경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2)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 형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 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 의 학생 수	$\{(\text{해당 시·도의 행정구역 면적} \div \text{해당 시·도의 학교 수}) \div \Sigma(\text{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div \text{시·도별 학교 수})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text{해당 시·도의 도서·벽지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div \Sigma(\text{시·도별 도서·벽지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 \times$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수급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해당 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 단위비용 ※ 단위비용 산정방식: $\frac{\text{표준 행정수요액의 합}}{\text{전전년도 기준 측정단위 수치의 합}}$	4,498천원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만 6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수급자 수 × 10%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용 컴퓨터 지원액) +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수급자 수 × 8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수업료 2)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충원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전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지원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1)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u>교육부장관</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단위비용

		<u>이 집행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적용률</u> <u>2) 정산결과 남는 금액</u> <u>3)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u>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 × 학교복합시설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u>3)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u>4) 정산결과 남는 금액</u>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u>임시</u>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증설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전환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당 매입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토지면적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는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바.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1)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 <u>2)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u> <u>3)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u>	
		<u>임시</u>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건축비
	사.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토지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취득비
		건축연면적	{(교육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지원청 청사 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m ² 당 건축비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sum(\text{연령별 유아 수} \times \text{단위비용})$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령별 지원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원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교원 처우 수준, 교원의 학급 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당 지원액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유치원 수 × 단위비용) + (원아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단위비용
	라. 삭제 <2015.11.5.>			
7. <u>늘봄학교</u> 및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u>초등학교</u> , 중학교, 고등학교 및 <u>중등과정 운영</u>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u>초등학교</u> , 중학교, 고등학교 및 <u>중등과정 운영</u> 특수학교의 학급 수 × 단위비용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생 1명당 연간 수강료
	다. <u>늘봄학교</u>	학급 수	학급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이

	지원		정하는 적용률	정하는 학급당 연간 운영비
		교실 수	교실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실당 시설비
8. 고교무상 교육 지원	가. 입학금· 수업료	학생 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초·중등교육 법」 제10조제2 항에 따라 각 시 ·도별 조례에 규정한 입학금· 수업료
	나. 학교운영 지원비	학생 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 교별 금액
	다. 교과용 도 서 구입비	학생 수	1) $\sum\{(\text{학생 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1 - \text{교육청 부담분 비율})\}$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각 시·도의 학 교별 금액
9. 재정 결합 보전	가. 지방채 상 환	원리금 상 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 자 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 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 화 지원	지원액	$[(\text{해당 연도의 해당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div \sum(\text{해당 연도의 시·도별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설정한 기준재정수요액})] \times \text{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u>10. 교원 연 수 운영· 지원</u>	<u>가. 교원연수 운영</u>	<u>교원수</u>	<u>교원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연 수비</u>
	<u>나. 교원역량 개발</u>	<u>교원수</u>	<u>교원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 1 인당 역량개발 지원비</u>
<u>11. 기초학력 보장 지원</u>	<u>가. 기초학력 진단</u>	<u>학생 수</u>	<u>학생 수 × 단위비용</u>	<u>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학생 1 인당 기초학력 진단비</u>
	<u>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u>	<u>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u>	<u>학습지원대상학생수 × 단위비용</u>	<u>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학습지 원대상학생 1인 당 학습지원교</u>

				육 운영비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 원	가. AI 디지털 교과서	학생수 및 교원수	(학생수 × 단위비용) + (교원수 × 단위비용)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일인당 AI디지털교과서 및 클라우드 이 용료
	나. 인프라 구축	학생수	학생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이 보급률,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기기 구 입 · 사용비
		교실수	교실수 × 단위비용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교실당 구축비
13. 학력인 정 평생교 육시설 운 영 보조	가. 인건비	교원 및 사무직원 수	1) 교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장관 이 정하는 적용률 2) 사무직원 수 × 단위비용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 1인당 임금
	나. 운영비	평 생 교 육 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 단위비용 ×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교 육 부 장 관 이 정하는 시설당 연간 운영비

비고

-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단위비용은 다음 표에 따르되,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학급수의 단위비용은 직선 보간법(直線補間法)으로 산정한다.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 통신 중학교	일반 고등학 교	특성화고 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방송 통신 고등 학교	특수 학교	영재 학교	대안학교		
	단설	병설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 장							초등학 교 과 정 운영	중학교 과정 운영	고등학 교 과 정 운영
3학급	19068	63,312	40331	284,482	527,507	291,874	18,168	527,565	857,298	22,449	637,650	-	380,172	518,026	501,342
5학급	208768	77,154	-	-	-	-		-	-		-	-	-	-	-
6학급	218335	87,260	455,966	312,262	576,553	322,124		584,351	996,171		687,059	611,028	411,875	552,012	540,843
7학급	227213	-	-	-	-	-		-	-		-	-	-	-	-
8학급	238535	-	-	-	-	-		-	-		-	-	-	-	-
12학급	285255	-	529,273	-	656,803	-		699,408	1,548,745		790,444	1,224,644	454,470	606,764	603,627
18학급	-	-	601,146	-	755,642	-		779,884	2,122,481		892,636	1,358,992	510,976	665,452	662,901
24학급	-	-	667,433	-	809,447	-		845,998	2,281,498		961,308	1,555,088	567,322	702,123	719,098
30학급	-	-	765,789	-	889,894	-		902,938	2,872,864		1,016,530	-	650,924	741,680	767,497
36학급	-	-	827,232	-	940,611	-		1,007,988	3,224,488		1,060,337	1,829,225	-	-	-
42학급	-	-	885,149	-	1,038,836	-		1,089,173	3,679,662		1,101,732	-	-	-	-
48학급	-	-	944,087	-	1,084,430	-		1,142,079	3,811,525		1,153,686	-	-	-	-
54학급	-	-	992,372	-	1,125,419	-		1,185,883	4,222,817		1,197,456	-	-	-	-
60학급	-	-	1,057,533	-	-	-		-	-		-	-	-	-	-

-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단위비용에서 "선진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

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과목중점형"이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의2. 측정항목 제2호사목의 학교 유형별·규모(연차)별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240,000천원	270,000천원	300,000천원	330,000천원

나. 통폐합 기숙학교

수용정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50명 미만	15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단위비용	300,000천원	400,000천원	450,000천원	500,000천원

다. 삭제 <2021. 11. 16.>

라. 삭제 <2024. 00. 00.>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	규모	단위비용
1)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가)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당 3,000,000천원
	나)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	학교당 5,250,000천원
	다) 30학급 이상	학교당 7,500,000천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증설	증설학급 수 × 22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증설	450,000천원 + [(증설학급 수-2) × 150,000천원]
	다) 7학급 이상 증설	1,200,000천원
3)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가) 1학급 이상 3학급 미만 개편	개편학급 수 × 375,000천원
	나) 3학급 이상 7학급 미만 개편	750,000천원 + [(개편학급 수-2) × 225,000천원]
	다)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 개편	1,650,000천원 + [(개편학급 수-6) × 150,000천원]
	라) 10학급 이상 개편	2,250,000천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1) 운영비

학교 유형	학급수	단위비용	비고
가)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	(1) 18학급 미만	147,500천원	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

을 목적으로 하는 학 과로서 교육감이 지정 한 학과를 설치·운영 하는 고등학교	(2) 18학급 이 상 27학급 미 만	188,000천원	는 경우 학급수는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 에 설치된 학급수로 산 정한다
	(3) 27학급 이 상	228,000천원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 18학급 미 만	132,000천원	
	(2) 18학급 이 상 27학급 미 만	168,000천원	
	(3) 27학급 이 상	204,000천원	
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 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1) 18학급 미 만	66,000천원	
	(2) 18학급 이 상 27학급 미 만	84,000천원	
	(3) 27학급 이 상	102,000천원	

2) 교육환경 구축비

학교 유형	단위비용	비고
가) 학과 내 학점 제 운영 세부전 공 과정을 개설 하려는 고등학교	(세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세부전공을 개설한 전체 학급 수) × 125,000천원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경 우 시설, 설비의 설치비 등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 한 비용은 최초 1회 지 원한다
나) 학과 내 학점 제 운영 부전공 과정을 개설하려 는 고등학교	부전공으로 개설한 전체 과정 수 × 125,000천원	
다) 공동실습소 또는 직업교육센 터 에 학점제 운 영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고등 학교	공동실습소 또는 직업교육센터 에 개 설한 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수 × 125,000천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급수	18학급 미만	18학급 이상 27학급 미만	27학급 이상
단위비용	558,000천원	620,000천원	682,000천원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학급수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20학급 미만	20학급 이상
단위비용	29,000천원	34,000천원	38,000천원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교직원"이란 교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 3의2.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표준행정수요액”이란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복지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세부사업의 과거 5개년도 합산액을 말한다.

- 가. 학력향상지원
- 나. 특수교육운영
- 다. 특수교육복지
- 라. 학생상담활동
- 마. 교육비지원
- 바.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 사. 교육복지우선지원
- 아. 급식비지원
- 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 차. 검정고시운영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4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공식에서 “학교복합시설 인정 연면적”이란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과 중복되는 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말한다.

5.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공식에서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 -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한다.

5의2. 측정항목 제5호가목의 산정공식에서 “집행률”이란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시설 환경개선 세부사업의 전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의 비중을 말한다.

6.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측정항목 제8호의 산정공식에서 교육청 부담분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8. 측정항목 제8호나목 및 다목의 단위비용에서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은 전년도 각 시·도의 학교별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9. 측정항목 제12호의 “학습지원교육”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가. <u>학교 통합 폐합 등</u>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합 폐합 학교 수 × 단위비용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1) 초등학교: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4,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교장 개편 학교 수 × 단위비용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00,000천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 단위비용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가) 초등학교: 5,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중등학교: 8,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	가) 1개 이상의 학교 시

		합·운영한 학교 수 × 단위비용	설을 폐쇄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1) 초등학교 폐쇄: 6,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중등학교 폐쇄: 11,000,000천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1,000,000천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초과 학생 수 × 단위비용	20,000천원
나. —학교시설—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sum$학교별 신설비·증설비 절감액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	
다.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sum$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해당 시·도의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sum$ [(시·도별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시·도별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체 시·도의 전전년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액 × 2.5% ÷ 전체 시·도 수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에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증가한 시·도 수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	

		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2)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4호나목에 따른 금액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해당 시·도의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 단위비용		1,000,000천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5호에 따른 금액		

비고

1. 카목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통합·운영~~”이란 학교 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목의 산정공식 2)를 산정할 때에 “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 - 전전전년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이 0보다 작은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산정한다.
3.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란 1) 및 2)에서 “이월률 및 불용률”이란 각각 [(해당 회계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의 합산액 ÷ 해당 회계별 예산현액) × 100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 0.8 + 사고이월액 + 계속비 이월액 × 0.5]에 따라 산정하고,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하반기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월액 및 예산현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한다.
4. 라목의 이월률 및 불용률의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	-------------------	------------------------------	------------------------------	-------------------

예산현액 규모 \		포인트 이하	포인트 이하	
1) 예산현액이 5조원 미만인 시·도	50	-15	-30	-50
2) 예산현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시·도	75	-25	-50	-75
3) 예산현액이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인 시·도	100	-30	-60	-100
4) 예산현액이 20조원 이상인 시·도	150	-45	-90	-1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나.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의 경우

(단위: 억원)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 \ 예산현액 규모	0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0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1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2 퍼 센 트 포인트 이하	2 퍼 센 트 포인트 초과
1) 예산현액이 1조원 미만인 시·도	30	-8	-15	-30
2) 예산현액이 1조원 이상 3조원 미만인 시·도	40	-12	-25	-40
3) 예산현액이 3조원 이상인 시·도	50	-15	-30	-50

비고: 위 표에서 “이월률·불용률 -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란 (해당 시·도의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목표치)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5. 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비율”이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의 상반기 지출액을 그 예산과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반기 지출 목표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6. 라목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의 산정공식란에서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이란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교육비특별회

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값이 0.9 이상 1.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고, 0.9 미만이거나 1.1 초과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7. 라목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산정공식란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단위: 억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	0미만	0이상
적용금액	-10	0

비고: 위 표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실제값”이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 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 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 ·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4조의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 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의 운영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 회(이하 “위원회”-----). ② 위원회-----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 금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 교부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 업의 선정, 위탁, 사업비용--- -----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 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생략)

2.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23명-----

-----.

④ 위원-----

-----.

-----.

1. (현행과 같음)

2. -----
----- 4급 -----

3.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유아교육·초중등교육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5. 그 밖에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유아교육·초중등교육 및

⑤ (생략)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⑧ (생략)

<신설>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
를 갖는 경우

2.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4
호에 따라 위촉된 지방공무원
인 위원이 속한 기관이 교부
금의 감액·반환 및 이의신청
의 대상 기관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
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